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즐거운 자활의 시작 「GS25 해피스토어」

업 무 협 약 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과 (주)GS리테일(이하 “GS”라 한다)과 (사)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이하 “기아대책”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상호 신뢰와 우호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개발원”과 “GS”와 “기아대책”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창업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관 간 협력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 분야) 협약 기관은 다음 각 항의 업무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협약에 의해 결정한다.

- ① “개발원”은 자립준비청년 자활 참여 지원을 위해 「GS25 해피스토어」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자활센터의 발굴, 자립준비청년 자활사업 참여자 발굴 및 연계, 자활기업 창업 지원, 사업 모니터링 업무 등을 실시한다.
- ② “GS”는 「GS25 해피스토어」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장 제공 및 투자비의 일부를 지원(감면)하고, 점포 경영을 위한 경영주 교육, 우수 점포 및 종사자 포상(성과 및 목표 달성 필요) 등을 실시한다.
- ③ “기아대책”은 자립준비청년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한 맞춤형 교육 「해피스타트」 과 「GS25 해피스토어」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홍보 (기아대책플랫폼) 및 활동(재무 및 진로코칭 교육 진행) 등을 실시한다.
- ④ 협약기관은 「GS25 해피스토어」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타 사항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지원하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호협력한다.

제3조(비밀유지) 협약 기관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 인지한 상호 간의 업무상 비밀정보(개인정보 등)를 협약 기관의 동의 없이 협약의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외부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4조(협의조정)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 기관은 상호 협의 조정 또는 결정한다.

제5조(개정 및 해지) 협약 기관은 본 협약 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협약 기관은 상호 협의를 통해 본 업무 협약을 개정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단, 업무협약의 개정 및 해지를 실시하는 기관은 협약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별도의 협의, 통보 부재 시 매 2년간 본 협약이 연장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단, 본 협약은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 원칙을 기술하려는 것으로 협약 기관 간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본 업무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 기관은 본 협약서 3부를 작성하고 상호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4년 5월 20일



일자리사업본부장
서광국

서광국



편의점사업부지원부문장
김천주

김천주



소셜임팩트파트너십부문장
김태일

김태일